

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

신청인	기관명(법인명)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
	주소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68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